

‘축산법’, ‘가축전염병 예방법’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◎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) 소관 19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-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,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

◆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

○ 「축산법」 개정

-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

-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(standstill)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.
- 더불어, 닭·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○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

-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무

농약원료가공식품* 인증제가 도입된다.

* '무농약원료가공식품'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·가공·유통되는 식품임

-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「동물보호법」 개정

-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·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하고,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였다.

○ 「수의사법」 개정

-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또한,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* 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* ①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, ② 전문대 이상 비전공으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,
 ③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
-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·감독할 계획이다.

○ 「밀산업 육성법」 제정

-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인 밀산업을 안정적,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 *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('17) : 쌀 61.8kg, 밀 32.4kg
- ** 밀식용 소비량('17) : 218만톤(수입 215.5만톤, 국내 생산 3.7만톤) / 사료용 포함 414만톤
- 제정안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 생산·유통단지를 지정하고, 밀 유통·가공 시설을 지원하며,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또한, 국가·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.

○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

-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,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아울러, '재사용(생화류 등) 화환 표시제' 도입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고 화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「한식진흥법」 제정

-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.
- '한식'은 전통식품을 포함하여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,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"전통식품"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·가공·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·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.

○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

-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, 관리하고, 양봉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.
- 제정안은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, 꿀벌 신品种 개발·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양봉농가는 시·군·구에 등록하도록 하여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* 양봉(벌꿀) 생산액 : 3,711억원('17년)으로 축산업(201,227억원)의 1.8% 차지

참고 →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

연번	법률명	주요내용 및 시행일	담당부서
1	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하여 사정명령, 보고 및 출입·검사 등의 권한 부여 ○ 시행일 : 공포한 날 	축산경영과 (044-201-2346)
2	가축전염병예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시 과태료 부과 ○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함 ○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이 일시이동증지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다만, 제17조제1항제2호의2는 공포 후 9개월) 	방역정책과 (044-201-2519)
3	국산밀산업 육성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산업증진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실시 ○ 밀산업의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의 장려, 밀 생산·유통단지의 지정, 유통·가공 시설 등의 지원 근거 마련 ○ 밀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역할 규정 ○ 우선구매요청 대상을 국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로 한정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	식용산업과 (044-201-1835)
4	농림식품과학 기술육성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 벤처·창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○ 벤처·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와 역할 규정 ○ 벤처·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,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근거 마련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	농산업정책과 (044-201-2421)
5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	유통정책과 (044-201-2221)
6	농어업인삶의질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·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제반조치 시행 의무화 ○ 기본계획·시행계획·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삶의 사항 구체화 ○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국회 보고 의무 명확화 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 	농촌정책과 (044-201-1518)
7	농어촌정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도지사가 20만㏊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, 농식품부장관의 승인→협의하는 것으로 변경 ○ 시행일 : 공포한 날 	지역개발과 (044-201-1558)

연번	법률명	주요내용 및 시행일	담당부서
8	농업생명자원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(3년→5년) ○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 ○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사책 마련 의무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○시행일 : 공포한 날(다만, 제21조의2는 공포 후 6개월) 	증자생명산업과 (044-201-2475)
9	초자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초지조성허가 시 볼일 수 있는 조건 및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 	축산환경자원과 (044-201-2352)
10	한식진흥법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한식, 한식산업, 한식사업자 정의 ○국가와 지자체는 한식 진흥 기반 조성, 한식의 확산,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책 실시 ○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 마련 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 	외식산업진흥과 (044-201-2152)
11	농수산물 품질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신고수리 간주규정 마련 ○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 조치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처분규정(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) 삭제 ○법인학병·사망·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시 종전 행정재판부 효과의 승계 (상속인·양수인 등) 규정 신설 ○우수관리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·처분 내용 명확화 ○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 확대('농산물품질관리사 취득 후 1년 종사자' 추가) ○농산물 및 농산기공품의 경쟁 대상에 '품종' 추가 ○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및 응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다만, 제107조제2항·제3항제1호는 공포한 날) 	식생활소비 급식진흥과 (044-201-2278)
12	동물보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·선전하는 행위를 추가,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○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됨을 규정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다만, 제33조제3항·제4항, 제34조제3항·제4항, 제35조제4항은 공포한 날) 	동물복지정책팀 (044-201-1574)
13	수의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동물보건사 명칭 및 시험응시자격 신설 ○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○동물병원 개설, 방사선장치의 설치·운영, 동물진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○무자격의 동물병원 개설시 처벌 규정 마련 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다만, 제5조, 제17조, 제17조의3, 제22조의3, 법률 제5953호 부칙 제4항은 공포한 날, 제2조제3호의2, 제16조의2~제16조의6은 공포 후 2년) 	구제역방역과 (044-201-2535)

연번	법률명	주요내용 및 시행일	담당부서
14	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봉산업, 양봉농가, 밀원식물을 정의 ○ 양봉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○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 ○ 꿀벌 신품증 육성, 연구·기술개발, 밀원식물의 조성, 국제협력의 촉진 및 양봉 관련 사업을 지원 ○ 양봉농가는 시·군·구에 등록하여야 함 ○ 양봉산업 관련 종사자의 단체 설립근거 마련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</p>	축산경영과 (044-201-2336)
15	FTA농어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 마련 ○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·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→농어업 관련 학교,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 ○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별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</p>	농업정책과 (044-201-1720)
16	축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, 충축 등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○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를 취소 ○ 영업정지 처분을 같은하는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 ○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·운영 근거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 마련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(다만, 제17조, 제29조는 공포한 날)</p>	축산정책과 (044-201-2326)
17	친환경농어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무농약원료가공식품' 인증제도 도입 ○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,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정취소 등 근거 마련 ○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 위반자 과징금 부과 ○ 인증기관의 자정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 ○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회수·폐기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임류 및 조치명령 공포 근거 마련 ○ 인증기관 및 공시기관과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준수 사항 및 사후관리 규정 마련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</p>	친환경농업과 (044-201-2437)
18	한국농어촌공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가 ○ 농어촌공사의 임직원 등이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 비밀준수의무 규정 적용 배제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</p>	농촌정책과 (044-201-1512)
19	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훼, 화훼산업, 화훼문화 정의 ○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○ 화훼산업 통계작성·관리, 실태조사 실시,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○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,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○ 우수화원 육성,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<p>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</p>	원예경영과 (044-201-2261)